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더욱 행복한 일터가 됩니다

일과 삶의 균형!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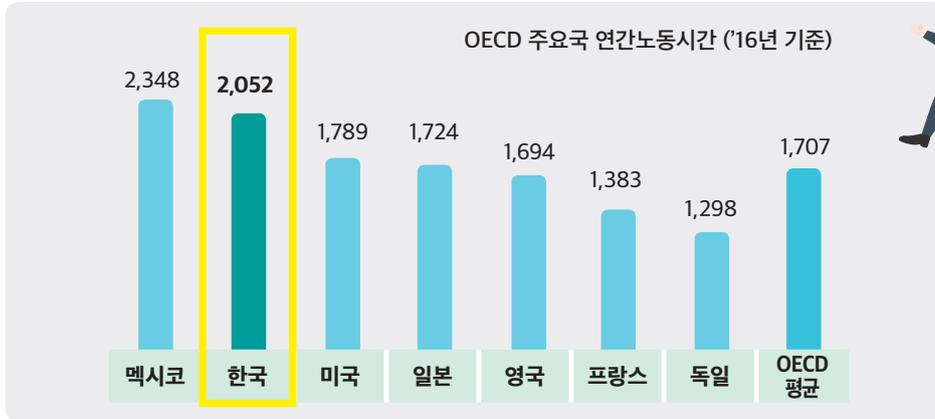


노동시간 단축, 왜 필요할까요?

장시간 노동, 지금 우리는...



◆ 연간노동시간이 OECD국가 중 2위로 노동자의 건강권·휴식권 훼손, 삶의 질 저하, 기업경쟁력 약화 초래



◆ 현재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1주 최대 68시간까지 근로 가능

◆ 26개에 이르는 노동시간 특례업종에 495만명 근무 중

노동시간 특례업종

노사 서면합의 시 연장근로를 제한 없이 시킬 수 있는 업종



노동시간 단축, 특례업종 축소 등으로 장시간 노동 개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노동생산성 상승

◆ 주당 노동시간 1% 감소 시 시간당 노동생산성 0.79% 상승 ('17년, 예산정책처)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후 1인당 노동생산성 1.5% 상승 ('17년, KDI)



일자리 창출 효과

◆ 노동시간 단축 시 신규채용 최대 13만 7천명~17만 8천명 예상 ('17년, 노동연구원)



산업재해 감소

◆ 노동시간 1% 감소 시 재해율 3.7% 감소

* 제조업은 노동시간 1% 감소 시 재해율 5.3% 감소('05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300인 이상 기업, 특례제외업종은 2018년 7월 1일부터 노동시간이 줄어듭니다



1 노동시간 단축

노동시간,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

◆ 휴일·연장근로 포함, 최대 52시간



◆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



시행시기

◆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시행

300인 이상 '18.7.1.

* 21개 특례제외업종 '19.7.1.

50 ~ 300인 미만 '20.1.1.

5 ~ 50인 미만 '21.7.1.



2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도입

30인 미만 사업장,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 인정
(노사 서면합의 시)



인정기간

'21.7.1. ~ '22.12.31.

3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휴일근로 할증률 명확화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시행시기

'18.3.20.



4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

* 노동시간 특례업종 : 노사 서면합의 시 연장근로를 제한 없이 시킬 수 있는 업종

◆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대폭 축소

26개



5개

시행시기

'18.7.1.(주 최대 68시간 적용)

* 주 최대 52시간은 '19.7.1.부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적용



특례유지
총 5개

① 육상운송업 ② 수상운송업 ③ 항공운송업 ④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

* 육상운송업 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특례제외
총 21개

① 보관 및 창고업 ②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③ 도매 및 상품중개업 ④ 소매업 ⑤ 금융업 ⑥ 보험 및
연금업 ⑦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⑧ 우편업 ⑨ 전기통신업 ⑩ 교육서비스업 ⑪ 연구개발업
⑫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⑬ 광고업 ⑭ 숙박업 ⑮ 음식점 및 주점업 ⑯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⑰ 방송업 ⑱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⑲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⑳ 사회복지서비스업 ㉑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보장

특례도입 사업장은 근로 종료 후부터
다음 근로 개시 전까지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시행시기

'18.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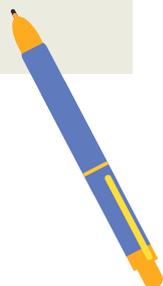


5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기업의 유급휴일로 의무화

시행시기

300인 이상 '20.1.1.
30 ~ 300인 미만 '21.1.1.
5 ~ 30인 미만 '22.1.1.



6 연소근로자 노동시간 단축

◆ 1주 노동시간 단축

40
시간



35
시간

◆ 1주 연장노동시간 축소

6
시간



5
시간

시행시기

'18.7.1.



노동시간을 줄이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합니다

2018년 7월 1일 부터

300인 이상

주 최대 68시간 → 52시간

특례제외업종

무제한 → 주 최대 68시간



노동시간을 줄이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신규채용 임금보전 지원 강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개편



◆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신규채용 인건비 및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 지원

신규
채용

증가노동자 수 1명당
1~2년간 월 40~80만원 지원

임금
보전

사업주가 임금감소액 보전 시
기존 재직자 1인당 1~2년간
월 10~40만원 지원
(임금보전 비용의 80% 한도)



300인 이상 기업

◆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금액 인상, 재직자 임금보전 지원 대상은 확대

- * 500인 이하 특례제외업종 추가
- * 공정위 공표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월 40만원, 1년



월 60만원, 1년

임금
감소액
보전

500인 이하 제조업, 2년



500인 이하 제조업
+ 500인 이하 특례제외업종, 2년

*지원금액은 1인당 기준임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과 고용창출지원금 연계 지원

- ◆ 기업의 신규채용 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70%)과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추가로 받도록 現 제도와 연계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과 연계 가능한 고용창출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을 정기적으로 신규채용 시 연봉의 1/3 수준(900만원)을 3년간 지원(2,700만원)

- ◆ 30인 미만 : 1명 고용 시~
- ◆ 30~100인 미만 : 2명 시~
- ◆ 10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3명 고용 시~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여 근로자를 신규고용 하는 기업에 최대 1년간 인건비 지원

-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 월 60만원
- ◆ 대규모기업 : 월 30만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기업에서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 시 최대 1년간 인건비 지원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월 80만원
- ◆ 중견기업 : 월 40만원

청년고용증대세제

청년 1명 신규고용 시 세금감면 기간 연장

* 청년친화기업은 1인당 500만원 추가 감면

- ◆ 중소·중견기업 : 3년, 연 450~1,600만원
- ◆ 대기업 : 2년, 연 300~800만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중)



고용창출지원금 추가 지원 예시

※ 고용창출지원금 간 중복 지원은 불가능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청년 1명 고용 시 최대 **7,690만원** 지원 (3년간 합산 금액)

- 일자리 함께하기 : 3,600만원(1명 × 100만원 × 36개월)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1,890만원(900만원 × 1명 × 36개월 × 70%)
- 고용증대세제 : 2,200만원(1,100만원 × 1명 × 2년)

※ 청년고용증대세제 입법 추진 중이며, 도입 시 1인당 500만원 추가 감면

신증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신증년 1명 고용 시 최대 **5,812만원** 지원 (3년간 합산 금액)

- 일자리 함께하기 : 3,600만원(1명 × 100만원 × 36개월)
- 신증년 적합직무 : 672만원(80만원 × 1명 × 12개월 × 70%)
- 고용증대세제 : 1,540만원(770만원 × 1명 × 2년)

시간선택제 신규 고용지원

시간선택제 근로자 1명 고용 시 최대 **5,644만원** 지원 (3년간 합산 금액)

- 일자리 함께하기 : 3,600만원(1명 × 100만원 × 36개월)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 504만원(60만원 × 1명 × 12개월 × 70%)
- 고용증대세제 : 1,540만원(770만원 × 1명 × 2년)



노동자의 퇴직급여 손실방지

초과근로 감소로 인한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급여액 감소 예상 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
(18년 6월)



퇴직금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
연금제도(DB) 도입 사업장의
퇴직급여 손실 방지 위해
별도 산정기준 마련



생산성을 높이고 일하는 방식이 개선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 생산성 향상 지원

일터혁신 컨설팅 확대



- ◆ 장시간 노동 개선
컨설팅 지원 규모 확대
* '18년 200곳 → 650곳

- ◆ 노동시간 개선이 시급한
특례제외업종 중심으로
업종별 표준모델 개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 ◆ 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
(K-앱시스트) 참여기업 선정 시
노동시간 단축 중소기업 우선 지원

- ◆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
참여기업 선정 시
노동시간 단축 중소기업에
가점부여 등 우대('19.上~)
* 최대 5천만원 지원
(뿌리기업 공정기술 개발의 경우 최대 1억원)

스마트공장 구축 등 지원



- ◆ 스마트공장 구축, 생산성 향상
컨설팅 등을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 우선 지원(~'22년, 1.5만곳)

- ◆ 스마트공장 제조핵심기술 개발 등
지원('18년 59억원)

- ◆ 스마트공장 운영·설계 인력양성 확대
* 스마트공장 석·박사과정 확대
('17년 3개 대학 → '18년 4개 대학)
*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100명 포함,
약 2,200여명 양성('18년)

2 일하는 방식 개선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 ◆ 근로여건 취약사업장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규모 확대
* '18년 6,500곳 → 8,000곳

- ◆ 노동시간 준수 관련 교육규모 확대(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대상)
* '18년 4,000명 → 9,000명

3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도입

근무혁신(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등)
실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제도 도입('19년~)

* (예시) 세제지원, 근로감독 면제,
컨설팅 우선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



4 유연근무 활성화 지원

간접노무비 지원

- * 유연근무 활용 1인당
주 5~1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 * 유연근무제 매뉴얼 제작·배포



필요한 인력을 빨리 채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 일자리 매칭 서비스 강화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우선 매칭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을 '일자리발굴 중점관리기업'*
으로 선정, 구인관련 애로사항** 해소

* 중점관리기업 : '17.12월말 기준 15,570개 기업
→ '18년은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중심 선정

** 예) 교통이 불편한 산업단지의 채용 편의를 위해
고용센터에서 구직자들의
집단 동행면접 지원



일자리 매칭 인프라 강화

온라인

워크넷에서 구직자에게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의
일자리정보 우선 제공



오프
라인

장시간 노동업종 사업장 밀집지역에
'고용지원 순회출장센터' 확대·운영
→ 신속한 일자리 매칭 실시

2 직업훈련 등을 통한 인력양성 확대

재직자 훈련 지원 강화

내일배움카드 >

1234 5678 9012 1234
0920
CARD

노동자의 역량개발 강화 위해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확대

* (예시)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자 중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 포함

지역산업맞춤형 훈련 확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직종을 중심으로 훈련과정 운영

중소기업 핵심인력 양성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전문교육 확대
→ 스마트제조 등 핵심 전문인력 양성

* ~'22년까지, 약 5만명

노동시간 특례제외업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유연근로시간 제도 활용 및 제도 개선

유연근로시간 제도 활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실태조사('18.6월~), 노사·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유연근로시간 제도 유형

탄력적 근로시간제

특정 근로일의 노동시간 연장, 다른 근로일의 노동시간 단축
→ 일정기간의 평균 노동시간은 40시간(연장근로 포함 시 52시간)



예시

- ◆ 2주 이내 단위
(1주) 60시간 : 48시간 + 12시간
(2주) 44시간 : 32시간 + 12시간
- ◆ 3월 이내 단위
최대 64시간 : 52시간 + 12시간
* 3개월 평균 주 평균 52시간

* 주 52시간 법정시행일 전에는 휴일근로 최대 16시간 추가 가능

선택적 근로시간제

1개월 이내 정산기간의 총 노동시간만
정하고 각일, 각주의 노동시간과 출퇴근
시각을 노동자 자율에 맡기는 제도

- ◆ 자율출퇴근제, 시차출퇴근제 등과 유사하나, 일일 노동시간 조정 등을 더 유연하게 활용



재량 근로시간제

수행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시행령에서 규정)에 한해 노사가
서면으로 정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

- ◆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 ◆ 인문·자연과학 연구
- ◆ 정보시스템 설계·분석 등



주 최대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시행일보다 먼저 줄이면
우대 지원하겠습니다

법정시행일

300인 이상 기업 '18.7.1.

* 21개 특례제외업종 '19.7.1.

50~299인 기업 '20.1.1.

5~49인 기업 '21.7.1.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 300인 미만 기업이 노동시간을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먼저 단축 시 지원금액·기간 확대**

*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이 주 52시간으로 조기단축 할 경우에도 적용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월 40~80만원, 1~2년



법정시행일*까지 월 최대 100만원 지원/
법정시행일 이후는 월 최대 80만원 지원,
1~3년

임금
감소액
보전

월 10~40만원, 1~2년



법정시행일*까지
월 최대 40만원 지원, 1~3년

*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제조업 및 특례제외업종은 2년, 기타 업종은 1년 미만인 경우
각각 2년, 1년까지 지원

** 법 시행일이 49인 이하 기업은 '21.7.1.이므로 '18.7.1.부터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지원금액은 1인당 기준임

2 공공조달 우대



3 정책자금 우선 지원

◆ 국책은행의 일자리 금융상품 지원대상을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까지 확대

* 금리·용자 한도 등 우대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기업 선정 시
우선 심사대상에 추가



4 설비투자비 용자 우선 지원

◆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 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우대

* 사업주 설비투자비 총 금액의 2/3 이내로 최대 50억원 지원,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이율: 1~2%

◆ 제조업 공정혁신 등의 소요 자금을 우선 용자

* '18년 3,300억원, 시설자금 70억원,
운전자금 10억원 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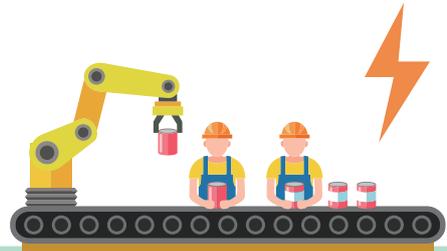


5 산재보험료 할인

제조업 등의 50인 미만 기업에서 노동시간 조기단축 시

법정시행일까지 산재보험료율 10% 경감

* 현행 : 위험성평가 인정 20%, 사업주교육 인정 10% 할인



6 외국인 노동자 배정 우대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 신규 배정 시
가점 부여 등



7 포상 우대

각종 선정·심사 시 가점 부여 등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 「가족친화기업」
인증 심사 등



참고 주요 업종별 지원

① 노선버스업

- ◆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지도
- ◆ 운수종사자 양성·공급방안 마련
 - 운전자 양성사업, 군 운전경력자 활용, 채용설명회 등
- ◆ 노·사·정 논의 통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대책 마련('19년)



② 건설업

- ◆ 공공공사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공기연장, 추가비용 발생 시 계약기간 조정 등 지침 마련
- ◆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공사기간 연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해외공사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 신규 수주현장에 채용장려금 등 지원프로그램 활용 안내



③ 사회복지서비스업

- ◆ 시설유형별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라인 마련
- ◆ 고위험 최종종 장애인 돌봄인력의 휴게시간 준수방안 추진
- ◆ 보육교사 업무 대체를 위한 인력 충원방안 검토



④ ICT서비스·SW업

- ◆ 적정기간 산정 등 발주문화 개선 위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18.4.26~ 입법예고)
- ◆ 300인 이상 대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안착 유도, 300인 미만 기업은 맞춤형 컨설팅 제공



⑤ 콘텐츠·방송산업

- ◆ 콘텐츠 노동시간 단축 등 제도개선 적용 가이드라인, 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 표준제작비 기준 마련
- ◆ 방송업계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 제정 시 노동시간 준수 등 포함



⑥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 ◆ 인건비 산정기준 현실화, 기술등급별 배치기준 세분화로 적정 기술인력 증원 유도
- ◆ 지자체·처리대행업체간 위탁계약 관리·감독*
 - * 교대인력 증원 지도, 휴일근로수당 가산적용 등

